

【 주간이슈 】

유럽의 공사(公私)협력 보험 운영사례와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한상용 연구원

□ 우리나라의 공사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리스크관리는 사회보험분야의 보완적 역할, 피해자구제차원의 의무보험 인수, 자연재해보험의 운영대행 및 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사협력과는 차이가 있음.

○ 유럽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복지국가 범위와 국가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새로운 거대재해리스크에 대한 정부와 민영보험회사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안이 전개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최근 10년 동안 공사협력의 심화와 국가 간 협정의 체결, 보험사 간의 협력 등을 통하여 새로운 리스크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향후 국내에서 공사협력을 해야 할 분야로는 지진 등 자연재해리스크, 인구 고령화로 인한 리스크, 환경리스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유럽의 공사보험 협력의 국내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성된 상호적인 원칙과 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함.

○ 둘째, 공사협력을 하는 시장일지라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계약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경제적 편익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시장의 자유, 기업가 정신과 경쟁 등은 공사협력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보험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해당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정부와 보험회사는 테러, 지진 등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참여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해야 함.

본고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해 국가만의 관리로는 예산상의 제약 등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거대리스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책보험으로 도입하여 민영보험은 인수를 대행하거나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지만, 공사협력분야는 아직도 많이 있고 기존의 협력 모델에 있어서도 방법과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유럽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을 등과 같은 사회적 리스크의 질적 변화로 인해 복지국가의 범위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대형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통적인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
- 유럽의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율은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급부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구 6명중 한명은 65세 이상인 반면에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1975년 24%에서 2003년 16.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인 당 출산율은 1965년 2.72명에서 1995년 1.4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그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의료보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고비용 의학기술의 발달로 1인당 평균의료비 지출은 1992년 1,382유로에서 2002년 2,008유로로 급증하였음.
 - 또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 허리케인, 테러, 환경오염, 식품 안전위험, 석면폐증 등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emerging risk)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음.
 - 2003년 유럽의 홍수피해는 약 10억 유로, 가뭄피해는 약 10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현재 유럽 국가들은 환경보호, 식품안전 또는 의사 등 전문인배상책임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관리에 있어 보험 산업이 정부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공보험으로 운영되었던 리스크에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보험사들은 공보험이외의 다른 리스크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전통적으로 부과방식(pay-as-you-go)에 기반을 둔 EU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는 보장급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므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유럽에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와 보험회사 간 협력을 통한 보험운영사례에서 보면, 민영보험이 사회보험제도를 보충적 하거나 대체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민영보험회사의 사회보장제도 참여는 보장급부 수준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계약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을 가져왔고, 보험행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었으며 보험서비스가 신속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해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 분야에서 민영보험은 보완 또는 대체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본고는 유럽 국가들의 공사협력을 통한 보험운영 사례를 사회보험 분야와 자연재해 등 거대재해리스크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2. 사회리스크 분야의 공사협력 사례¹⁾

- 산재보험제도는 20세기 초부터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등에서 성공적으로 민간 보험시장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음(cooperation model)²⁾.
 - 이들 국가에서 민영보험의 산재보험 참여는 정부의 예산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산업재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상대책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근로자들에게 고품질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1) Aidan Cassell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Solutions for a Change Society*, CEA, June 2005

2) Munich Re, *Worker's Compensation Analysis of private and public systems*, 2000, p.21

- 네덜란드는 과거 10년에 걸쳐 보험회사들이 국영 산재보험제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³⁾.
 -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과도하게 누적되어온 산재보상급여의 적자를 해소하고 보험운영체계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근로자, 고용주, 보험자들이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방지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재무적 인센티브가 강화 되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유럽의 국가들은 공적보험의 보완적, 보충적(complementary, supplementary) 역할에서 대체적(substitute) 역할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액의 증가율(1990년 대비 2005년) 평균 29.8%로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증가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

<표 1> 유럽 국가별 민영보험 역할형태별 보험가입율(2000)

국가별	민영보험 가입율			GDP대비 의료비 비중(%)		
	대체형	보완형	보충형	1990	2005	증가율
벨기에	7.1%	30-50%	-	7.2	10.3	93.1
네덜란드*	24.7%	60%이하	-	8.0	8.0****	-
독일*	9.0%	9%	-	8.3	10.7	28.9
프랑스**	특정근로자 적용	85%	-	8.4	11.1	32.1
오스트리아*	0.2%	18.8%	-	7.0	10.2	45.7
덴마크*	-	28%	-	8.3	9.1	9.6
스웨덴*	-	-	1.5%	8.3	9.1	9.6
핀란드***	-	-	7세이하 34.8% 7-17세 25.7% 성인 6.7%	7.7	7.5	-2.6
영국	-	-	11.5%	6.0	8.3	38.3
아일랜드	-	45%	-	6.1	7.5	23.0
이탈리아*	-	15.6%	-	7.7	8.9	15.6
스페인*	0.6%	11.4%	-	6.5	8.2	26.2
포르투갈**	-	-	12.0%	5.9	10.2	72.9
그리스	-	-	10.0%	5.8	10.1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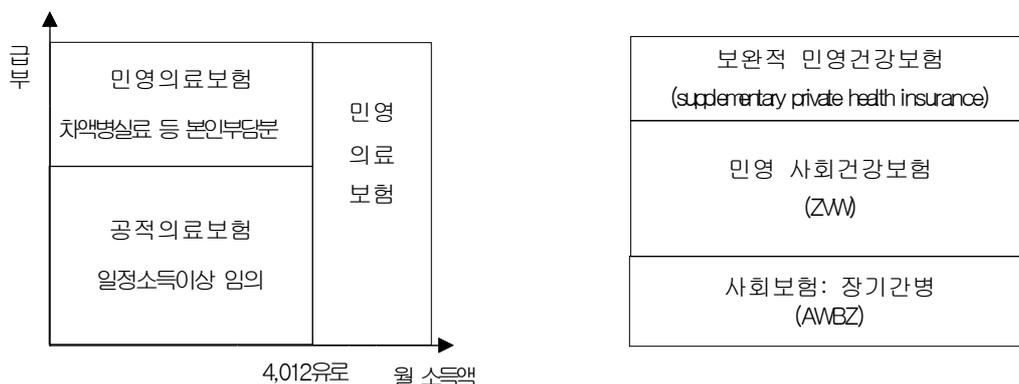
주: * 1999, ** 1998, *** 1999, **** 2000

자료: Christine Andre & Christoph Herman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In Europe, 2007, p.6, p.14

3) Leo J. M. Arts-Philip R. de Jong, "Privatization of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State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Netherland and United States", 2nd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25-28 Jan-uary 1998

-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은 민영보험회사의 공적건강보험 참여를 허용하였음.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공적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일괄적으로 보상받도록 하여 계약자의 니즈를 부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보험 회사 간 경쟁이 크게 촉진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스페인은 MUFACE(mutual fund for civil servants)에 대한 대체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페인 정부는 각 주 공무원들에게 공적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급부에 대해 민영건강보험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재 공무원의 86%가 이를 선택하고 있음.
- 네덜란드와 독일은 민영보험회사가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향후 이들 국가에서 건강보험은 민영보험회사들에 의해 공적인 규제 하에서 사적인 형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과 공적건강보험간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2007년 의료보장개혁을 통해 공적의료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월 소득 4,012.5유로로 낮추었으며, 민간보험 가입자는 공무원, 자영업자, 학생은 수입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공적보험가입조건인 월 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⁴⁾
 - 네덜란드는 2006년에 전 국민 의무가입인 사회보험형태를 갖추되 민영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였으며, 보험료는 소득 50%, 자치단체요율 50%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음⁵⁾.

<그림 1>독일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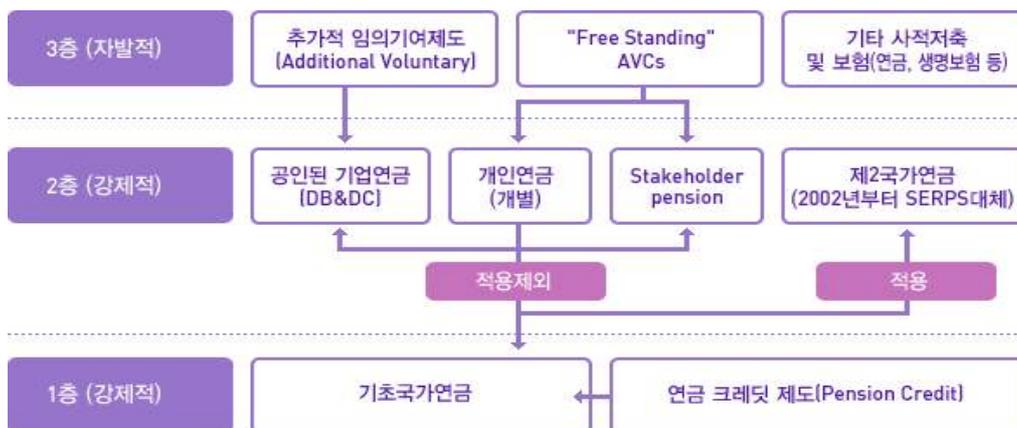
4) 川端勇樹, “ドイツ民間醫療保險市場の動向-公的醫療保險と關聯と民間醫療保險業界の展開”、『損保 ジャパン總研クォーター』, 2008. 8, p.9.

5) Stefan Greb et al., "Health Insurance reform in the Netherlands", CESifo DICE Report, 1/2007, pp. 63-64.

□ 유럽 국가들은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이 완전히 대체하거나 부분 대체하면서 공사보험의 조화를 통해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부문의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EU는 2003년 5월 13일 ‘퇴직연금취급기관지침’⁶⁾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 적용할 건전성규제(투자와 경영의 자유, 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 선관주의의무(Prudent Person Principle)의 준수 등)를 도입하였음.
 - 이러한 건전성규제 장치의 마련은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다양한 종류의 상품공급 증가와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유도하여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음.
- 영국은 국가연금의 적용제외연금제도(contract out)의 일환인 관리연금(Stakeholder Pension)⁷⁾을 도입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민영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연금의 매출이 대부분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정부의 강력한 규제⁸⁾가 존재해 시장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 영국의 공사연금 역할 분담체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spage/intro/research/overseas/overseas_06.jsp)

6) 2004/41/EC(directive 2003/4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June 2003 on the activities and supervision of institutions for occupation retirement provision)

7) 관리연금은 중저소득층을 국가연금(national pension)에서 적용제외(contract out)시켜 민영보험회사의 확정각출형 사적기업연금(private pension)에 가입하도록 허용한 상품으로 2001년도에 도입되었음.

8) 관리연금에 대한 규제는 계약자로부터 각출금액이 최저 월 20파운드, 최고 연소득의 100% 또는 3600파운드를 초과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고 수수료도 연 1%(최소 10년간은 1.5%로 제한)로 제한하며 투자도 27개 연금펀드에만 한정되어 있음. 손해보험사업총합연구소(2009), p.124

3. 거대재해보험 등의 공사협력 사례

- 프랑스와 스페인은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민영보험회사와 정부가 분담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들 국가에서는 민영보험회사들이 홍수 등 자연재해리스크를 인수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유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정부가 운영하는 재보험기금으로 전가하여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연재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이는 향후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에 있어 공사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에 부보 할 수 없는 거대자연재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음.
 - 또 다른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의 공사협력 사례는 오스트리아(HORA Project)⁹⁾, 영국과 같이 홍수리스크지도(flood risk map)를 제작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간의 파트너십형성 등이 있음.
 - 영국은 홍수리스크관리를 위한 홍수지역설정, 토지계획과 방재조치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와 민영보험회사가 협력하여 홍수리스크지도를 제작하고 있음.

<표 2> 유럽의 풍수해보험 공사협력 운영체계 현황

국가별	민영보험	정부역할		
		보험	재보험	사후지원
벨기에	○(의무)	○(기금)	-	-
덴마크	-	○(풀)	-	-
핀란드	○(정부)	-	-	-
프랑스	○	-	재보험	-
독일	○	-	-	거대손해
이탈리아	○	-	-	-
노르웨이	○(풀)	-	-	-
포르투갈	○	-	-	-
스페인	○(공사)	-	-	기금
스웨덴	○	-	-	-
스위스	○(동산, B 담보)	주정부	-	-
네덜란드	○(집중우)	-	-	거대손해
영국	○	-	-	-

자료: Laurens M. Bouwer-Dave Huieta-Jeroen C.J.H. Aerts, "Adaptive Flood Management: The Role of Insurance and Compensation in Europe, 2007 Amsterdam Conference- Conference on the Human Dimension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4~26 May 2007

9) http://ec.europa.eu/environment/water/flood_risk/flood_atlas/pdf/flood_maps_ch6.pdf

-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 보험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네덜란드 기업들은 자국 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고객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테러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많은 협상을 벌여 왔음.
 - 그 결과, 정부와 민간보험회사는 테러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테러리스크에 대한 재보험제도가 시행되었음.
 - 테러리스크의 재보험 보상한도인 10억 유로에 대해 원수보험회사는 4억 유로, 재보험회사는 4억 유로, 정부는 2억 유로를 분담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짐.
 - 네덜란드의 테러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사례는 사적부문인 보험회사들과 공적부문인 정부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최상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원자력리스크와 같은 특수 거대리스크는 민간시장이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영보험만으로는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동 부문에서도 공사협력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에서 원자력리스크는 공사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은 보험에 부보된 책임의 일부를 보상하고 공적부문은 그 나머지 책임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계층시스템(layer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배상책임보험분야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구제차원을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강제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거대성 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 환경오염에서도 공사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02년 3월 법령(Koucher Act of March 2002)을 제정하여 의료과실보험을 운영기구(ONIAM)를 공사협력체제를 마련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인수를 의무화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인수할 수 없는 리스크(uninsurable risk)”도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¹⁰⁾.

10) Jurgen Simon, "Economic Implications of Medical Liability Claims: Insurance and Compensation Schemes", European Conference(The Ever-Growing Challenge of Medical Liability: National and European Response), 2-3 JUNE 2008, p.14, p.17

- 이로 인해 많은 보험회사가 의료배상책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의료과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프랑스정부는 2005년에 고위험리스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GTREM: Groupement Temporaire de Reassurance Medicale)를 도입
- 고위험계약의 인수는 보험가입이 두 번 이상 거절된 의사인지 여부를 중앙 요율산출기구(Bureau Central de Tarification)에서 평가하고, 공동인수기구인 GETREM이 인수하는 것임.
- o EU는 2004년 4월 21일 환경배상책임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채택하여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해 보험회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환경배상책임지침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s-Pay Principle)에 입각하여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기업 등에게 환경파괴의 예방과 회복의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오염유발자에게 엄격책임과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의무보험가입 등의 재무적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4월 현재 EU의 27개 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법화 했으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영국 등의 국가가 환경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있음. 자국법화 한 국가 중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은 환경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을 채택하였음.

<표 3>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의 부담책임법리

활동구분	환경손해	부담법리
위험스럽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업활동(hazardous or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수질오염 손해	엄격책임 적용 (기본적 복구, 보완적 복구, 보상적 복구)
	토지오염 손해	
위험하지 않은 사업활동(non-hazardous activities)	보호종 및 자연 서식지 파괴 손해	과실책임 적용 (기본적 복구)

자료: 이기형,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2008.3

□ 농업리스크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전부터 공사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리스크거대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민영보험회사가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스페인은 1980년부터 농업리스크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조직(농림부, 경제부, 지방자치단체)과 민영보험회사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영보험사는 보험영업을 하고 일정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재보험풀(CCS)¹¹⁾에 전가하는 형태임.
 - 이탈리아 정부는 농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관청, 보험회사,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나오는 제안들을 수용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를 매년 수정하면서 보험가입을 통한 농업리스크관리를 장려하고 있음.
- 기타 사례로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민영보험회사와 정부가 성공적인 공사협력을 이루어짐.
- 벨기에에는 자동차보험회사와 “29/29 협정”을 체결하여 29세 이하 저연령 운전자의 리스크관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음. 이 협정은 29세 이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29세 운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129%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나 복잡한 법령을 제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연한 해결책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스페인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에게 병원건축 비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병원이 건축된 후에는 1차 진료를 포함한 진료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관리함.
 - 오스트리아는 민영보험회사들에 의해 공적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사례임.
 - 2000년 이후 정부는 민영보험회사에 자동차 등록을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만들어 주었음.

4. 국내 공사협력현황 및 시사점

<국내 현황>

- 국내에서는 대형 사고를 매개체로 하여 공사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추진함.

11) 보험보상협의기구(The Insurance Compensation Consortium : CCS) <http://www.consoseguros.es/web/guest/i>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인명사상이 발생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피해자 보상이나 손실배상이 미흡하여 사회적 리스크(social risk)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의무보험화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 등 총 16개 의무보험¹²⁾이 존재함.
 - 의무보험제도에서 정부는 운용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미가입자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 등 보험상품의 운용을 맡고 있음.
 - 민영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리스크관리 서비스와 요율제도를 통한 사고방지를 유도하여 대형 인명사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0년대 이후에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에 취약한 농·어업인에 대한 공사협력 보험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 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정부는 보험제도에 대한 근거법과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보조와 재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보험분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있어서 보완형 및 보충형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4> 한국의 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고령화율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2)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 × 100, 3)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1.

12)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계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총 의료비는 2007년 기준으로 6.8%나 차지하고 있으나 지출증가속도는 1990년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00~2007년 동안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9.2% 증가해서 선진국 평균 3.7%를 크게 앞섰고 OECD 30개 회원국 중 최고의 증가율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민영보험사의 역할이 더 증가가 예상됨.
- 향후 민영보험이 공사협력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기여해야 할 분야는 현재 국내의 문제점을 먼저 경험한 유럽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나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역할변화가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 국가에서처럼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건강리스크, 산재리스크, 환경리스크 등)를 정부가 민영보험사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5> 국내 공사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분야

구 분	세부리스크	공보험	사보험	협력현황: 역할/영업	추가협력방향
인적 손해	건강리스크	국민건강보험	생명,상해,건강보험	보완/보충, 직접인수	일부 대체
	근로자재해	산재보험	근재보험	일부대체, 직접인수	일부 대체
	자동차사고	83년 사보험화	책임보험	대체, 직접인수	-
	화재 등 제 3자재해	-	20개 의무 보험	대체, 직접인수	-
물적 손해	자연재해	농작물, 풍수해, 양식재해	화재보험 등	보완, 위임인수	산림보험 등 대체 확대
	자동차사고	-	책임보험	대체, 직접인수	-
	환경오염	-	책임보험	-	의무보험화
	지진	-	화재보험(특약)	-	공보험화
	테러사고	-	-	-	협력필요
시스템 리스크	금융기관도산	예금자보험	-	-	-
	실업손실	실업보험	소득상실보험	일부대체, 직접인수	일부 대체
	중소기업도산	-	-	-	정책보험
	기상이변	-	일부상품 제공	-	협력필요
산업 정책	퇴직금손실		퇴직연금	대체, 직접인수	-
	수출 계약 손실	수출보험	-	-	-
	실업손실	실업보험	소득상실보험	일부대체, 직접인수	일부 대체

<시사점>

- 기존의 공사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공사협력 분야의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유럽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공적부문인 정부와 사적부문인 민영보험회사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를 이해하여 공사협력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은 어느 한 부문이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야 함.
 - 정부가 보험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공사협력을 위한 필수조건임.
 - 정부가 민영보험회사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공사협력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모든 리스크들을 보험을 통해 담보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공사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모두에서 서로 다른 원칙들과 한계들이 먼저 이해되고 고려되어야 함.
 - 민영보험자들의 전문성과 원칙들이 충분히 고려될 때에만 민영보험은 공적 보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충으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경쟁적인 시장구조는 보험가입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사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시장구조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경쟁적 환경에 있는 보험사들은 고객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적 요구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임.
 - 경쟁적 사업 환경은 민영보험회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개발, 저렴한 보험료, 높은 보상수준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있음.
- 시장의 자유, 기업가 정신과 경쟁 등은 공사협력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보험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해당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공사협력을 통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채택해야 함.
 - 정부와 보험자들이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공사협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를 위해 보험자들은 보조금-부과금제도(Bonus-Malus System)와 개별적 손실에 근거한 효율산출을 통해 리스크로 인한 손실방지조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당국은 보험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방안을 채택해야 함 KiRi.